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쟁의 기독교 교육적 함의

유재봉*

논문초록

이 논문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논쟁들을 논의하고, 그러한 논쟁이 기독교교육에 주는 함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주요내용과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논의에 들어 있는 사립학교를 보는 관점과 정치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사립학교법은 부정적·소극적 입장이나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삶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기독교교육에 주는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소극적 의미로서, 기독교교육을 표방하는 기독교계 학교가 지금까지 해온 교육에 대한 반성적·성찰적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의미로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교육 구현을 위한 가정과 기독교학교의 방향을 탐색하는 일이다.

핵심주제어: 사립학교법, 기독교교육, 정치적 논의, 교육학적 논의,
개정사립학교법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I. 서론
- II. 사립학교 개정법의 주요내용 및 이슈
- III. 개정 사립학교법에 관한 정치적·교육적 논의
- IV. 개정 사립학교법 논의가 기독교 교육에 주는 의미

I. 서론

한국에서 사학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크다. 전체학교 중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기준으로 중학교 22.5%, 고등학교 44.8%, 전문대학 91.1%, 대학 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를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중등학교 수준이든 대학 수준이든 간에 사립학교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한국 교육과 사회발전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한국교육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사립학교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의 문제는 장래 한국교육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다른 한편으로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전횡 등의 문제를 일으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물론 2000여 사학 중 심각한 문제로 관선이사를 파견한 이른바 '비리사학'은 35곳에 불과하지만, 흔히 목도할 수 있지만 심각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은 비리를 포함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부정적 측면이 그동안의 한국교육에 이바지해온 공헌을 반감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교육, 특히 초중등교육은 표면적인 이념에 못지않게 학교의 전체적인 풍토와 같은 잠재적인 요소

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는 교육전체, 좁게는 사립 교육의 건전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비교육적인 요소는 제거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은 두 가지의 의도에 의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기존 사립학교법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1963년(6월 26일 법률 제1362)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기본 틀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오늘날 시대와 사회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현행 사립학교의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사립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함으로써 학교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은 시의에 맞게 하되 최소화해야 하며,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약간의 비리 때문에 지나치게 학교의 자율성 등을 제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제 31차 개정 사립학교법은 2005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기 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법에 대해 일부 종교단체, 사학단체, 야당에서 심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한편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의 내용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념 내지 세계관이 다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학적 문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논쟁에는 교육을 어떻게 보고 학교를 어떻게 보느냐의 기본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의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러한 논쟁에 깔려있는 정치학적 교육학적 논의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1) 사립학교법은 2004년 10월 20일 복기왕 의원이 처음 제출하였으며, 3당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정세균 의원의 안이 최종적으로 입법되었다.

이 글은 개정 사립학교법 논의가 넓게는 교육, 좁게는 기독교 교육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개정 사립학교법의 주요 논쟁점을 살펴보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타나 있는 정치학적 교육학적 가정을 검토하며, 그러한 논쟁이 기독교교육에 주는 소극적 적극적 의미를 탐색한다.

II. 사립학교 개정법의 주요내용 및 이슈

개정 사립학교법은 기존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지만, 몇 가지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란을 균형적으로 다루기 위해 그러한 논쟁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개정 사립학교법이 현행 사립학교법의 어떤 점을 개정하였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유익한 방식은 현행 사립학교법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없던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 정수의 1/4이상을 개방형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며, 감사선임도 이사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2명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 임의기구인 대학평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였으며, 친족이사 비율을 이사정수 1/3에서 1/4로, 교장임기 제한이 없던 것에서 4년 중임으로 하였다. 또한 재단이사회 회의록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예산편성은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파면되거나 해임된 재단의 임원복귀가 2년간 불허되던 것에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불가하도록 강화되었다. 개정 사립학교법을 현행 사립학교

법과 비교하여 법조문의 순서대로 제시하면 표1과 같다.

어떤 교육정책이든 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찬성하는 진영도 있고 반대하는 진영도 있듯이, 개정 사립학교법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나뉘어 있다. 대체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찬성하는 진영으로는 정부 및 열린 우리당, 전교조나 진보적인 시민단체 등이며, 반대하는 진영으로는 한나라당, 사립학교 단체, 교총, 보수적 시민단체 등이다.

물론 개정 사립학교법을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 내에서도 총론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다소 입장을 달리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주요 세 가지 이슈, 즉 개방형 이사 도입 및 감사선임 문제, 직계존비속의 교장 임명금지와 교장임기 제한 문제,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문제 등을 차례로 검토해 보자.

첫째, 개방이사 및 감사선임이다. 사립학교법의 가장 큰 이슈는 개방이사의 선임문제이다. 개방이사는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고,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최종 선임한다(제14조 제3항). 개방이사 선임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정관에는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절차와 방법을 학교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종교계 학교의 경우에는 개방이사의 자격을 종교 신자로 한정할 수 있으며, 건학이념을 바꾸려면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는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제21조 제5항).

개방형 이사제도나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그것은 학교의 소유권 문제, 재산권 문제, 건학이념 구현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이다. 사학단체에 의하면, 법인은 사학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구이다. 임원선임권은 법인의 고유권한인 기본권이므로, 피고용인이 사실상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방이사의 경우,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재단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 만든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받아야 하며,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

〈표 1〉 사립학교법 개정요지

내 용	현 행	개 정
이사·감사 선임 (제14조제3항·제21조제5항)	이사회에서 선임	이사의 1/4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 및 정관으로 정함 감사 중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자를 선임
시정 요구 없음 취임승인 취소 근거 신설 (제20조의2제2항)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경과 시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시정 불가가 명백하거나, 부패부정, 뇌물수수 등 비리정도가 중대시 시정 요구 없이 취소 가능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0조의3)	없음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위한 감사 시, 시정요구기간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으로 손해 예상 시 직무 집행정지가능
임원의 선임요건 강화(제21조)-친족 이사 수	1/3	1/4
임원의 겸직 대상자 강화(제23조제1항)	당해법인 설립학교의 장 겸직 불가	타법인의 이사장이나 학교장도 겸직 불가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제25조의3)	정시사는 임시이사회에서 선임	정시사는 관할청에서 선임하되 재산출연자 학교발진 기여자의 의견 청취
대학평의원회 설치 (제26조의2)	임의 규정	필수기관으로 반드시 설치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및 대어금지 예외 인정 (제29조제6항)	차입금 원리금 상환만 가능	임시이사 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법인의 최소 운영경비 전출 추가
학교장의 임기 (제33조제3항)	정관으로 정함	정관으로 정하되 4년 초과불가, 1회 중임가능
교원 공개 전형제 도입(제33조의2제5항)	학교에서 자율시행	사립고등학교 이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2007.3.1 ~)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명의 제한 (제54조의 제3항)	없음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교장임명 불가

(출처: 사립학교법개정시행령위원회, 2006: 8)

결하는 이사회의 구성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방이사 도입은 학교경영권 등 사학법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는 것이다. 나아가 건학이념과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개방이사 참여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 점이 개방이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사립학교가 개방형 이사제도를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이유가 일반 사립학교의 경우는 전교조 소속의 교사가 이사회를 장악하여 이념적으로 몰고 가거나 학교운영에 집단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 때문이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는 전교조 교사를 포함한 동일 종교인이 아닌 경우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교육이 공적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기의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교는 개인이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지닌 공익법인이다. 실지로 사립 중고교에는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가 공립과 똑같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재단 전입금이 초·중·고의 경우 연간 운영예산의 평균 2%, 대학은 평균 8.5%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중학교 75.8%, 고등학교 54.2%)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학교의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위해선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학이념의 구현 문제와 관련하여, 교원은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에 의해 이념화 될 가능성은 적다. 전교조 교사는 전체 교육의 22%,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는 12%에 불과하며, 5-10명의 전교조 교사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른 학교 전교조 교사를 개방이사로 추천할 가능성과 다른 학교의 개방이사가 되기 위해 소속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종교사학의 경우, 개방이사의 추천과 선임 방법을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동일 종교인의 추천이 가능하며, 따라서 각 학교가 지향하는 건학이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명제한 및 교장의 임기제한 문제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회구성에서 친족의 범위를 1/4로 축소하고,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해당 학교장에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제54조 3항). 그리고 교장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 초과는 불가능하며,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제53조 제3항). 다만, 현직 이사, 학교장의 임기는 보장한다.

교장의 임명과 임기 제한과 관련하여,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진영에서는 재단 설립자와 그 친족들이 이사회 4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장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를 4년 중임만 허용하는 것도 교장의 학교운영과 교무 장악력을 저하시키고 학교법인의 정당한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사장의 부모·자녀·배우자의 학교장 임명 금지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은 학교를 사유재산이라고 보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2005년 4월 기준 현재 전체 사학의 17.4%가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이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비리와 분쟁이 끊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정에서 족벌경영의 폐해 등 사학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재단 이사장 가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보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학의 전횡을 막고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다. 마치 기업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처럼 재단 운영과 교육을 분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을 필수기관화 및 심의기구화 문제이다. 현재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이지만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자문기구를 심의기구화해 재단이 독점하던 학교 경영권과 예·결산권 등을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 등이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는 대학평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였다(제26조의 2). 이것은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학교경영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을 반대하는 진영에 의하면, 우선 학교조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개정 사립학교법을 따르게 되면 학교장이 편성해 온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 의결은 이사회가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교사회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장악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도 좌지우지하게 되어 학교경영에 있어서 마찰이 빚어져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표2〉 개정 사립학교법 주요 쟁점 비교

사학단체	쟁점 사항	정부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선임권은 법인의 고유권한 -재산권 침해 -동일종교인이 아니거나 전교조 교사 이사일 경우 건학이념 구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이사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의 성격에 충실 -학교재산권은 공공복지 차원에서 제한가능 -전교조 교사의 이사 가능성 적고, 동일 종교인 이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법인 인사권 제약은 법인 기본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학교장 교무 장악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인척의 교장 임명제한 및 교장임기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사학비리예방 위해 일부 제한가능 -사학의 전횡 방지 및 민주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 조직의 법적 강제력은 사학의 자주성 침해 -학교경영 마찰 및 비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위원회 심의기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와 자치 통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부작용은 민주주의적 운영 과정의 일시적 현상이며, 민주주의적 교육실천 가능

그리고 임의조직인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 사립학교법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결국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학교운영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과 갈등은 민주주의적 운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뿐이며, 민주주의적 교육을 실천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 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Ⅲ. 개정 사립학교법에 관한 정치적 교육적 논의

개정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쟁에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 사립학교를 보는 관점, 개정 사립학교법에 나타난 정치적 관점, 그리고 교육적 관점 등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의 논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러한 제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 측면의 논의는 편의상 구분한 것이며, 실제로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을 보다 상세히 논의해 보겠다.

1. 사립학교를 보는 관점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그리고 현행 사립학교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를 어떤 방식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한편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사립학교가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립학교의 불분명한 성격 때문이다. 196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성격은 많이 변화되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실시되어온 중학교의 무시험제도, 고등학

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생의 독자적 선발 대신 국가가 학생을 배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의무교육 확대실시로 인해 중등학교의 교사인건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사립학교는 사실상 '사인(私人)이 세운 학교'라는 것 외에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세운 국공립 학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사립학교라기보다는 공영(公營)적인 성격을 띤 학교라고 볼 수 있다(박재운, 2001: 239-240). 이렇듯 사립학교의 성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정 없이 유지되어 옴에 따라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그러한 사립학교의 성격을 명확히 하거나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논란의 핵심인 이사장의 지위와 역할의 혼돈도 따지고 보면, 사립학교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법인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장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관련된 다양한 논란을 해소하는 데 관건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법인의 대표권이 이사장에게 있고, 이사회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이 의사결정의 전권을 행사하고 이사회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이사장의 모호한 지위와 역할이 조종 전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학비리와 부정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

현행 한국의 사립중등학교는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많은 재정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형편(중학교 75.8%, 고등학교 54.2%)이다. 이 점에서 한국 사립중등학교는 공영의 성격을 띠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사학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사립학교의 국가 재정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사립학교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기보다는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2) 영국의 경우 voluntary controlled school, voluntary aided school 등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공공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는 공영학교로 분류된다.

와 고등학교의 평준화로 인한 불가피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사립학교의 특성을 잃고 공영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사립학교 본래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반대의 논리도 성립된다.

사립학교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관련된 두 가지의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 하나는 공영적 성격의 사립학교를 그대로 두고 그에 걸맞게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이 경우 개정되는 사립학교법은 공영적 성격에 충실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사학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이사회에 관한 분산 및 학교자치의 강화, 학교운영의 족벌체제 극복, 비리사학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지금의 개정사립학교법의 논란에서 보듯이, 지금까지의 관행에 익숙해진 사립학교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현행 공영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립학교를 원래의 위치로 돌려 사영화 하는 방법이다. 아마 30여 년간 고착된 현행 공영적 성격을 띤 사립학교를 일시에 사영으로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립주체가 개인이든 학부모 조합이든 간에 자립형 사립학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 정부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할 권리는 물론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보는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표면상 사학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사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표면상의 이유 이면에는 사립학교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 즉 사립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은 한편으로는 기존 사립학교가 족벌체제와 비리 등의 문제를 관행적으로 해온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교육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정부는 교육적 마인드, 즉 교육이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임시처방식의 대책을 내놓은 셈

이다. 교육정책은 소극적부정적 방식으로 사립학교의 비리와 문제를 막음으로써 투명하게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2. 정치적 관점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진보주의적 시각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그것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현행 한국 사회의 정치성향이나 관행상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낭만주의적 환상에 불과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자유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은 자유보다는 평등 내지 균등을 우선하는 입장에 있다. 교육기본법 제2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표면상으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그리고 사립학교의 다양한 교육이념을 추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실질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 정수의 1/4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위원회 추천하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14조 3항)와 학교감사 중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위원회가 추천하고 1인은 공인회계사를 두는 개방형 감사제(21조 5항)의 도입, 이사회 회의록의 의무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일(18조의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요건을 넓히는 일, 임원선임의 제한 사항 강화, 임원겸직 금지범위 확대, 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대학평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일 등이다. 반면에 학교의 자주성 내지 자율성을 확보하는 부분은 거의 배제되어 있는 형편이다.

물론 개정 사립학교법의 출연자의 정관 기재,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원선임의 제한, 임시이사의 해임, 회계의 구분, 예결산의 제출, 학교장 아닌 교원 임명, 임명의 제한, 징계사유의 시효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박남화, 2006). 실지로 이러한 법 조항들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나 비리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사회의 권한행사 등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중 몇 가지는 법적 인 측면에서 위헌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이사회에 1/4 이상의 개방형 이사를 포함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은 전원이 개방형이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초·중·등 사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교장의 임기를 4년 중임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경영의 본질적 부분인 '인사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제성호, 2006). 그리고 위헌성은 그다지 없지만 의결정족수, 임원의 겸직 금지, 이사 선임, 대학평의회, 회계 구분 등의 조항은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박남화, 2006).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치중한 나머지 사립학교의 자주적 운영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강하다(임재홍, 2006). 물론 비리사학은 엄격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비리사학 때문에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의 문제를 도외시키고, 모든 사학에 일률적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교육 선진국들은 사립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수하거나 잘 운영되고 있는 공립학교에조차 자율성을 주고 규제를 최소화하며,

기존의 규제조차도 완화하거나 융통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영국의 2001년 교육백서 '학교: 성공적인 성취'(Schools- achieving success)와 그것의 교육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법안(Education Bill 2001)에는 높은 성취를 보이거나 이를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학교에 많은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간소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 선진국에 비해 학교경영이 불투명한 탓이겠지만, 개정 사립학교법은 시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법을 제정하면서 정작 법률의 통과를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를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법의 급작스런 처리로 인해 합의가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히 가다듬어야 할 내용을 남겨 두었다는 점이다. 후자의 문제는 시행령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가다듬거나 보완하면 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우리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의 미성숙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 이유가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 강화,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 교육주체들의 자율적 권한과 참여 강화에 있다면, 의당 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말아야 하고, 법을 제정하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절차 또한 원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슬로건이라기보다는 삶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 잘 드러나듯이, 한국의 의회는 첨예하게 이 해가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 '토론을 통한 최선책의 합의도출'이라는 민주주의의 절차에 충실하기보다는 '논쟁을 통한 헤게모니 쟁탈전' 양상을 띠다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결말을 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교문화권이 비슷하다. 동양권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보다는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즉 겉으로

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가 사안을 꼼꼼이 따져보고 자유와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기보다는 군중심리나 당파에 의해 결정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단순히 정치제도가 아닌 '삶의 원리'로서 민주 주의의를 지향한다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형태는 교육에 있어서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민주주의로 여기게 되며, 민주주의를 삶의 실제로 체득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3. 교육적 관점

이상의 논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정부의 학교를 보는 관점과 정치적 관점이 깔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사학운영의 공공 성 및 투명성 제고'로 표현되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유에는 사립학교를 보는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전제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소극적·부정적 방식의 접근보다는 적극적으로 교육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정부의 정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자율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보다는 공공성의 강조를 통한 평등주의 실현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학의 자율성의 신장이 간과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과정도 토론을 통한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헤게모니 쟁탈전을 일삼다가 비민주 적 절차에 따라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육은 헤게모니 싸움에 머무는 것이 아 니라 민주주의적 원리를 일상 삶에서 실현하는 일이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 정에 나타난 정부의 사립학교를 보는 시각과 정치적 관점의 한계는 결국 교육 적 관점에의 해석으로 이끈다.

학교는, 그것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간에, 학생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 별 도로 마련한 교육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주된 관심사는 교육 목적의

실현, 즉 학생으로 하여금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이다. 학교의 공공성이나 투명성도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의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좋은 삶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좋은 삶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의 입장은 희랍시대 이후 오랫동안 학교교육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져 온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이상을 실현하는 일이다. 자유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 혹은 지성을 자유롭게 하는 교육이다. 자유교육의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좋은 삶은 합리적인 삶(rational life)이고, 합리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마음(rational mind)을 계발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마음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삶의 형식을 고스란히 추상화한 지식의 형식(forms of knowledge)에 학생을 입문시켜야 한다. 요컨대 자유교육은 지식의 형식에 학생을 입문시킴으로써 합리적인 마음을 계발하여 합리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자유교육에서는 이론적 지식을 합리성을 추구하고 좋은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지식의 형태로 보거나 논리적 토대로 보며, 따라서 교육은 이론적 이성과 이론적 지식의 추구로 특징 지워진다(Hirst, 1965; 유재봉, 2002a).

다른 하나의 입장은 교육을 교과나 지식보다는 실지 삶과의 관련성을 중요시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식의 형식 대신에 '사회적 실제'(social practices)에의 입문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의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좋은 삶은 인간의 전반적인 욕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만족시키는 일이고, 자신의 전반적인 요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나 관심사를 달성하는 데 요청되는 실천적 이성(practical reason)을 계발하여야 하며, 실천적 이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복합체로 이루어진 합리적인 사회적 실제에 입문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을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시킴으로써 실천적 이성의 계발하고 실질적인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Hirst, 1993; 1999a; 1999b; 유재봉, 2004).

좋은 교육이 무엇이며,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으로 하여금 좋은 삶을 실지로 영위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각 학교 나름대로의 고유한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그 학교가 그러한 교육이념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그러한 교육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학교법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IV. 개정 사립학교법 논의가 기독교 교육에 주는 의미

지금까지 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그 이슈 속에 들어 있는 사립학교를 보는 시각, 정치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결국, 사립학교법은 부정적·소극적 입장이나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삶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 셈이다. 이제 결론에 대신해서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 논쟁이 기독교교육에 주는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기독교교육에 주는 의미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이른바 기독교교육을 표방하는 기독교계 학교가 지금까지 해온 교육에 대한 반성적·성찰적 의미를 포함하고, 후자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교육 구현을 위한 가정과 기독교학교의 방향을 탐색하는 일을 포함한다.

1. 소극적 의미

사학법 개정 논의가 기독교교육에 주는 소극적 의미는 소위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비판적·반성적 의미에서이다. 기독교계 학교는 2004년 4월 현재 개신교계 사립학교는 전체 중학교의 19%(123/662개교), 종교계 중학교의 74%(123/167개교), 전체 고등학교의 18%(165/939개교), 종교계 고등학교의 73%(165/227개교)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한다. 전체 중학교의 약 1/5, 종교계 중학교의 약 3/4를 차지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을 할 충분한 장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기독교계 학교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기독교교육을 하기는커녕 표방된 건학이념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부정과 비리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도 하였다.

학교의 부정과 비리와 관련하여, 기독교계 학교는 일반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심각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황제적 권력, 친인척 족벌의 예산운영 및 학교운영으로 인한 불투명, 회계비리, 학위장사, 비리와 부정부패 문제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 점이 기독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으로 하여금 개정 사립학교법을 찬성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기독교계 학교는 적극적인 의미의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부정과 비리는 적극적으로 추방했어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 논의는 기독교계 학교의 이러한 부정의 관행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교계 학교는 기독교교육의 이념에 충실하기보다는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입시문제에 치중하였다. 사실상 기독교계 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는 채플이 있는 것과 종교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기독교계 학교가 이렇게 된 부분적인 원인은 제도적인 제약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공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의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렇다고 제한된 상황에서 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풍토를 기독교적 정신으로 운영한다거나, 교과를 가르치되 기독교적 관점을 포함한다든지, 학교행사나 계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 교사들의 생활지도나 상담을 통한 활동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다.³⁾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교육을 하는 일은 상당한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계 학교와 교사는 편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계 학교는 본래의 건학 이념은 슬로건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계 학교가 부정과 비리에 대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이지 않고 기독교교육의 이념에 충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개정 사립학교법이라는 뼈아픈 회초리를 통해 징계하시는 것이다. 쓰라리지만 그러한 징계의 의미와 교훈을 잘 받아들여 기독교교육을 회복할 때, 기독교계 학교는 전화위복이 되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 적극적 의미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기독교학교로 하여금 적극적 기독교교육을 하도록 요청한다.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든 문화와 문명의 세계에로 학생을 입문시키는 행위이다. 성경에서 교육에 대한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은 창세기 1:26-28 절의 '창조명령 혹은 문화명령'(Creation or Cultural Mandate)과 마태복음 28:18-20의 '대강령 혹은 대위임령'(The Great Commandment or

3)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언급한다고 해서 개정 사립학교법이 옳다거나 기독교교육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암시되었듯이, 개정 사립학교법은 편향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독교학교는 기존의 행태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기독교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ommission)이다. 이 두 구절은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 26-2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명령은 흔히 '문화명령'(culture mandate)이라 불린다. 교육이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명령 속에는 교육명령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명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대강령 혹은 대위임령'(The Great Commandment or Commission)이다. 대위임령의 내용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 하나

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주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세례 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로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일이다. 여기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일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넓게는 과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포괄한다. 이 점에서 대위임령은 문화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화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존재가 된다. 이러한 문화 명령의 수행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이 점에서 대위임령은 전도나 선교 명령이기보다는 포괄적인 교육명령으로 보아야 한다(유재봉, 2002b).

대위임령을 교육명령으로 볼 때, 그러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가정과 학교이다.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은 가정교육, 즉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교육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은혜 언약'에 기반위에 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은혜 언약의 자녀가 된다. 언약백성인 부모의 일차적 책임은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잘 키우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가정교육은 기독교교육을 위한 못자리로 볼 수 있다.

본격적인 기독교교육은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교사가 기독교 교육과정(curriculum)을 가지고 기독교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습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는 전도 그 자체보다는 크리스천 학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요체는 교육받은 기독교교사와 기독교적 교육과정(curriculum)이다. 기독교 교육을 하려면, 무엇보다 잘 구성된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구비하는 일이 요구된다. 기독교적 교육과정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와 세속 학문의 내용을 합쳐 놓은 것이 아니라 삶과 학문의 영역을 기독교적으로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쉬운 일이 아

니며, 여러 신학자, 교육학자, 교과전문가들의 협력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기독교적 교육과정의 구비되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기독교교육의 관건은 교육과정을 기독교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육받은 교사를 확보하는 일에 달려있다. 교사는 무엇보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육의 최전선에서 제자 삼는 일을 기꺼이 하려는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학문과 삶의 기본전제와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일과, 적극적으로는 학문과 삶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르치고 학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보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며, 균형된 시각보다는 다소 편향된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학교와 기독교교육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충격과 좌절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기독교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독교계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새롭게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본격적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는 비록 정부에서 확대허용을 반대하고 않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자립형 사립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남화 (2006). 한국교총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 논의.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시안 공청회 자료.

- 박재운 (2001). 사립학교법 개정논란의 쟁점. 한국교육개발원, 2001년 교육평론, 225-254.
- ____ (2003). 사립학교법 개정-초·중등사학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3년 교육평론, 213-240.
- 유재봉 (2002a). 현대교육철학탐구: 자유교육에 대한 비판 및 대안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____ (2002b). 세계화시대의 교육, 기독교 학문연구소, 온전한 지성, 9-10.
- ____ (2004). 허스트의 자유교육론에 대한 대안적 논의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7(2), 1-24.
- 임재홍 (2006).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시안 공청회 자료.
- 제성호 (2006). 사립학교법령 정비 방향.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시안 공청회 자료.
- Hirst, P. H. (1965).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in R. D. Archambault(ed.), *Philosophical analysis and educ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____ (1993a). Education, knowledge and practices, in R. Barrow and P. White(eds.), *Beyond liberal education: essays in honour of P. H. Hirs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____ (1999a). The Demands of moral education: reasons, virtues and practices, in T. H. McLaughlin and J. M. Halstead(eds), *Education in morality*, London: Routledge.
- ____ (1999b). The nature of educational aims, in: R. Marples(ed.), *The aims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ABSTRACT

The Debate on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Some Implic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Jae Bong Yoo*

Recently Korean society has sharply divided into two camps, ie. liberals and egalitarians. Egalitarians are not compatible with liberals concerning many educational issues including the private school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debate on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To accomplish this goal, I reviewed the main burning issues on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and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a view which uses the law for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purposes.

I assert that the private school law should be established or revised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rather than a political point of view. However,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determined neither educationally nor democratically. Nonetheless, the debate on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shed light on Christian education in two ways, ie. a negative and a positive one. On the one hand, it reflects seriously to what mission schools have existed for. It compels us to seek the direction of education which is based firmly on a Christian worldview on the other.

*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Key Words: private school law,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chool, political argument,
educational implication